

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(국립호국원) 안장 안내

□ 추진 배경

-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국립묘지(국립호국원)에 안장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
-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임무를 다하는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통해 제복근무자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문화 확산

□ 주요 내용

- (관련 법령)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(국립묘지법) 제5조 및 부칙 제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등 ※ '25. 2. 28. 시행
- (안장 자격)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안장 자격

-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 후
- ② 정년퇴직(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) 한 사람
※ 재직기간 계산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5조 준용
- ③ 다만,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(시행령 제3조제5항)이 있는 경우, 안장 여부 심의 필요
※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
- ④ 법 시행('25.2.28.)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(배우자 합장 가능)

① 30년 이상 재직

-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준용

※ 공무원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(年月數)로 계산하고, 재직 중 휴직기간, 직위해제기간, 정직기간 등은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

- ※ (사례) ■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재직 후 경찰로 10년 재직 : 가능
 ■ 군인으로 10년 복무 후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재직 : 가능

- 안장대상자 및 유족의 희망에 따라 **군 복무기간 합산** 가능하나, 이 경우 군인과 동일하게 **병적기록 이상유무 확인 필요***
- * 군경력 합산자의 경우 탈영, 제적, 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여부 심의

② **정년퇴직(연령정년 또는 계급정년)한 사람에 한정**

- 재직 중 사망, 명예퇴직 등 정년퇴직 이외의 퇴직 형태 불인정
- ※ (사례) ■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재직 중 의원면직 후 경찰 20년 재직 후 정년퇴직 : 가능
-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정년퇴직 이전 사망 : 불가능

③-1 **징계처분***이나 **비위사실***이 있는 경우 **안장대상심의위원회**(국가보훈부)에서 안장 여부 **심의**(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)

- * (징계처분)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**강등, 정직, 감봉**
- (비위사실)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**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(선고유예 포함)**

- ▲ '재직 중의 사유'란 **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**
- ▲ 재직기간 이외는 타 안장대상자 기준과 동일하게 **금고형 이상의 형**
- ▲ 재직 중의 과실로 퇴직 후 형이 확정된 경우는 재직 중의 사유로 봄

③-2 다만, 다음의 경우는 국립묘지 안장 **당연 배제**

- ▲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(**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대상**)
-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▲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

④ **법 시행('25.2.28.)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**(배우자 합장 가능)

-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**배우자***는 합장(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) **가능**

*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

- ▲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. 다만,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,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
- ▲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. 이 경우 합장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
⑤ 생전 안장 대상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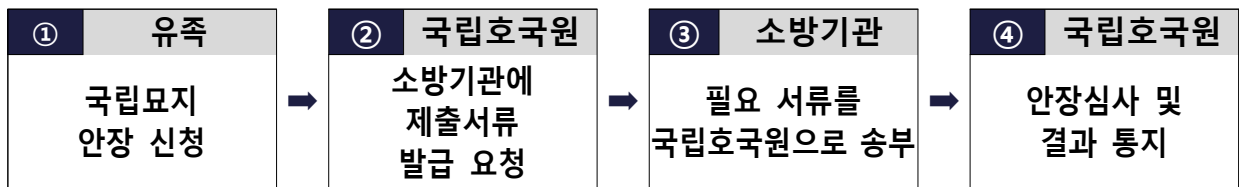
▲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의2(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)

- ① 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
- ②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

⑥ 안장기간 60년

- 안장(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)기간은 60년으로 하고,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결정
-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(起算). 다만,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

□ 안장 절차



① (유족) 국립묘지 안장 신청(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, ncms.go.kr)

② (호국원) 소방기관에 제출서류 발급 요청

- (평일) 소방기관에 공문으로 안장대상자의 경력증명서, 징계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

- (휴일) 경력증명서 등의 발급이 불가하므로, 소방기관 메일을 통해 안장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평일에 서류 발급 요청

③ (소방기관) 필요 서류를 호국원으로 송부

- 공문 또는 팩스로 안장대상자의 경력증명서, 징계사실확인서 송부

④ (호국원) 안장심사 후 유족에게 결과 통지

국립묘지(국립호국원) 안장 절차 안내(배너)

30년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(호국원) 안장 절차 안내

관련근거

-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(2024.2.27.공포 / 2025.2.28.시행)
※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시행

시행일

2025. 2. 28.

안장요건

- **경력요건:** 소방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근무(군 경력 포함) 후 정년퇴직 소방공무원 (※ 군 경력: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준용)
- **사망시점:** 법 시행일(2025. 2. 28.) 이후 사망한 경우부터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 (※ 법 시행일 이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)

안장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

사망 후 즉시
안장 불가

- **심의 후 안장 대상:**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안장 대상자의 요건)에 해당 되는 경우(아래 1, 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장심의를 거쳐 국립호국원 안장 여부 결정(사망 후 즉시 안장 불가))
 1. 징계처분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, 정직 또는 감봉처분이 있는 경우(국립묘지법 시행령 제3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)
 2. 비위사실: - (재직 중)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(국립묘지법 시행령 제3조 안장 대상자의 요건)
- (재직 전, 퇴직 후)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에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(국립묘지법 제11조 안장 신청 등)
- (군경력 합산자) 탈영, 재적, 징계처분 등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

- **안장배제 대상 (영예성 훼손 심의 없이 당면배제)**
 1.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 경력(국립묘지법 제5조제5항 제3호)
 2.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
안장신청 절차

1. **평일 주간** (유족) 안장시스템에서 안장신청 → (호국원) 사망한 소방공무원 소속 시도 소방본부로 제출서류 발급요청 → (시도소방본부) 서류 발급 후 각 호국원에 팩스로 회신
2. **휴일 기간** 금요일 18:00-일, 공휴일 (유족) 안장시스템에서 안장신청 → (호국원) 사망한 소방공무원 소속 시도 소방본부로 안장자격 확인요청 → (시도소방본부) 안장자격을 확인하여 각 호국원에 팩스로 회신
* 안장 자격 확인
3. **안장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**
- 각 호국원에서 공문으로 징계처분 사유 확인서류, 상훈기록 등을 요청 → 퇴직 당시 소속 시도본부에서 공문으로 회신

- **신청서류**
 1. (유족) 안장신청서 * 안장시스템(www.ncms.go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 2. (유족) 사망진단서·화장증명서 또는 제적등본
 3. (기관) 경력증명서 * 경력증명서의 경우, 소방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 군 경력 포함하여 제출
 4. (기관) 징계처분 사실확인서(견책을 포함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, 소방기관 발급용), 징계 의결서(견책을 포함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, 소방기관 발급용)

- **문의방법:** 안장신청 서류 문의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소속 시도 소방본부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연락 연결이 안되는 경우 소방청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안장행사, 안장일자, 위치 등 문의) 안장 예정인 지역 호국원 대표전화로 문의 바랍니다.

● 국립묘지 안장 관련 확인 소방기관 연락처

소방청 044-205-7037 대 구 053-350-4012 대 전 042-270-6167 경 기 031-230-2946 울 북 043-220-4843 천 남 061-890-3862 제 주 064-710-3512
세 울 02-3706-1361~2 인 천 032-670-3332 울 산 052-229-4562 경 북 031-849-2924 울 남 041-635-5662 경 북 (54-880-6133) 청 원 055-549-6043
부 산 051-790-3193 광 주 062-613-9009 세 종 044-300-8012 강 원 033-249-5438 천 북 063-280-3841 경 남 055-211-5335

● 전국 국립호국원 연락처

● 영천호국원 전화: 054) 330-0860 팩스: 054) 336-0776 ● 영월호국원 전화: 063) 640-6081 팩스: 063) 711-1212 ● 과천호국원 전화: 043) 830-1177 팩스: 043) 834-7760
● 여천호국원 전화: 031) 645-2345 팩스: 031) 645-2349 ● 산청호국원 전화: 055) 970-0770 팩스: 055) 974-9490 ● 제주호국원 전화: 064) 750-8470 팩스: 064) 730-8498-9

